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가합517737 판결 [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이도형

피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거래 관계

○ 원고는 동합금소재와 가공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전극선 및 전극관 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기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1993년 B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까지 매년 B에게 금속제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의 보증

○ 피고는 2001. 11. 9. 원고에게,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원고와 B 사이의 물품 공급 거래에 의해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어음 금액 12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위 약속어음 보증서 발급 이후 피고는 약 1년 마다 원고에게, 기존의 약속어음 보증서 채무를 승계하여 다시 1년의 보증기간 동안 B의 원고에 대한 물품공급 거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보증서를 발급하여 왔다(다만, 그 보증한도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11억 원, 19억 원, 20억 원으로 순차 변경이 있었다).

○ 피고는 2010. 10. 29. 기존의 약속어음 보증 방식에서 전자상거래담보보증 방식으로 변경된 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보증금액은 20억 원, 피보증인은 B, 보증기한 2011. 10. 28., 보증방법은 근보증으로 되어 있고, 보증특약 란에는 "본 보증서는 다음 각 호 채무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구 보증번호(보증번호 기재 생략, 이하 같다)에 의한 보증 책임은 소멸합니다. 1. 어음발행인 B와 수취인 원고 간에 약정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어음발행인 B이 부담하는 채무 중 2009. 10. 29.부터 2010. 10. 29.까지 발생한 채무, 2. 피보증인 B와 채권자 원고 간의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 중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발생한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위 보증 방식의 변경 후 약 1년 뒤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게 기존 신용보증의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보증기한이 기존 2011. 10. 28.에서 2011. 12. 28.로 변경되었다는 내용 외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

○ 이후 피고는 약 1년 마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를 발급하여 왔고(다만, 보증채무 최고액은 기존 2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2017. 12. 20.에 마지막으로 보증기한이 기존 2017. 12. 22.에서 2018. 12. 21.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의 보증약관

- 피고는 담보보증을 상거래담보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 피고의 상거래담보보증에 관한 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약관 (상거래담보보증용) 제1조 용어의 정의 1. "상거래계약": 보증서 앞면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서(납품계약서, 거래약정서, 대리점계약서, 용역공급계약서 등 포함)에 의한 계약 4. "보증조건": 보증서 앞면의 채권자, 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및 보증특약 제2조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 ① 이 보증서는 채무자가 보증기간 중에 상거래계약에 의하여 재화 등(이하 용역 거래를 포함합니다)을 구매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 대상 채무로 합니다. 다만, 실제 재화 등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허위거래나 자금유통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조 보증 책임의 부담 ① 피고는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간 중에 상거래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재화 등의 제공을 받음으로써 발생되고 보증조건에 부합한 보증부채권 중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 채무에 대하여만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면책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제4호(보증조건) 및 제4조(보증조건의 변경) 위반 3. 제2조(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 및 제3조(보증 책임의 부담) 위반

- 피고의 전자상거래담보보증에 관한 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약관 (전자상거래담보보증용) 제1조 용어의 정의 3. "전자상거래계약" : 기업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계약 8.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 중 피고 또는 C협회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연결된 곳 11. "보증조건" : 전자보증서에서 명시한 채권자, 피보증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보증금액 보증기하 및 보증특약 제4조 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전자보증서에 의한 보증관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성립합니다. 1. 피고가 채권자가 알 수 있도록 전자보증서를 피고의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전자보증서의 보증조건을 확인하고 전자보증서 약관에 동의한 때 2. 피고가 채권자에게 전자보증서를 직접 송신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전자보증서를 수신한 때 제5조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 ① 이 전자보증서는 채무자가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재화 등(이하 용역 거래를 포함합니다)을 구매함으로써 판매 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 대상 채무로 합니다. 다만, 실제 재화 등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허위거래나 자금유통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구매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계약서, 전자매출전표 등을 포함합니다)에 판매 기업, 구매품목, 구매일자, 구매금액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피고 또는 C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중개에 의한 구매 2. 피고 또는 C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판매 기업으로부터의 직접 구매 제6조 보증 책임 부담 ① 피고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관계가 성립된 때로부터 보증기한까지 발생한 전자상거래계약 및 보증조건에 부합한 보증부채권 중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 채무에 대하여만 이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 면책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조 제11호(보증조건) 위반 2. 제4조(보증관계의 성립) 및 제6조(보증 책임 부담) 위반 3. 제5조(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 위반

라. B의 파산 및 미지급 대금

○ B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2018하합7069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 1. 11.

파산선고를 받았다.

○ 원고는 2018. 10.경까지 B과 사이에 물품공급 거래를 하였는데, 합계 4,291,868, 206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의 보증금 지급 거절

○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 중 피고의 보증한도액인 18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증은 2010. 10. 29. 전자상거래담보보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B 사이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인데 원고와 B의 물품공급 거래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 제20조 제1항 제1 내지 3호를 근거로 보증조건 및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

위반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며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보증금 지급 의무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증약관은 피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에 관하여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면책 사유 인정 여부(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 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0. 10. 29. 기존의 약속어음 보증 방식에서 상거래담보보증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B과 원고에게 그와 같은 보증 방식 변경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의 내용 중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만을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의 내용 중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만을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 제20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면책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1) 당사자 관계의 특수성

○ 원고와 B은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물품공급 거래를 유지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없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피고는 2001. 11. 9. 원고와 B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에 의해 B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0. 10. 29. 보증 방식이 변경되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매년 보증기간만을 연장하면서(다만, 보증한도가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다) 반복적 · 지속적인 보증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 원고와 B, 피고 사이에서는 기존의 보증 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신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약관 전반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원고와 B, 피고는 매년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보증 관계를 연장하여 왔기 때문에 신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보다 약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피고가 도중에 보증 방식을 변경하게 될 경우 특히 기존 보증 내용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상세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 방식 변경의 경위 및 과정

○ 피고는 2010. 10.경 B에게 '피고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담보보증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허위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전자상거래 업체인 마켓플레이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보증서가 발급된다는 점 외에는 기존의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보증 방식을 기존의 약속어음 보증 방식에서 전자상거래담보보증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에 B은 보증 방식을 전자상거래담보보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 특히 피고는 B에게 변경된 방식의 보증이 기존 보증과 달리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거래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그러한 전자상거래는 피고 또는 C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중개에 의한 구매와 피고 또는 C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판매 기업으로부터의 직접 구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 등(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 제1조 제11호, 제5조, 제6조)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러한 거래가 아닐 경우 피고의 보증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는 내용 등(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 제20조)도 설명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도 2010. 10. 29. 변경된 방식의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뿐 그 변경 내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 또한 피고는 B이나 원고에게, 전자상거래 업체인 마켓플레이스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외에는, 위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위 회사의 중개를 통한 구체적인 거래 방법, 만일 위 회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3) 변경된 보증서의 문구 등

○ 피고는 2010. 10. 29. 원고에게 기존의 약속어음 보증 방식에서 전자상거래담보보증 방식으로 변경된 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보증서의 좌측 상단에는 "전자상 거래담보보증"이 아닌 "상거래담보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담보보증을 상거래담보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와 B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약 9년간 유지하였던 보증은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에 관한 보증이었던 데다가, 변경된 보증서에도 그 명칭이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이 아닌 상거래담보보증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나 B 입장에서는 보증 대상인 거래 유형에 변동이 없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위 변경된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은 20억 원, 피보증인은 B, 보증기한 2011. 10. 28., 보증방법은 근보증으로 되어 있고, 보증특약란에는 '본 보증서는 다음 각 호 채무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구 보증번호(보증번호 기재 생략, 이하 같다)에 의한 보증 책임은 소멸합니다. 1. 어음발행인 B와 수취인 원고 간에 약정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어음발행인 B가 부담하는 채무 중 2009. 10. 29.부터 2010. 10. 29.까지 발생한 채무, 2. 피보증인 B와 채권자 원고 간의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 중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발생한 채무'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방식의 거래 외에 기존 일반 상거래 방식의 거래도 함께 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4) 그 밖의 사정

○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보증 방식 변경 과정에서 B이나 원고에게 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이 교부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 그에 관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과 상거래담보보증약관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10. 10. 29. 원고에게 발급한 변경된 보증서의 명칭이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이 아닌 '상거래담보보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약관 확인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여지도 크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28. 보증 방식이 변경된 후 약 1년 뒤에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게 기존 신용보증의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보증기한이 기존 2011. 10. 28.에서 2011. 12. 28.로 변경되었다는 내용 외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

○ 그 이후로도 피고는 약 1년 마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를 발급하여 왔고(다만, 보증채무 최고액은 기존 2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2017. 12. 20.에 마지막으로 보증기한이 기존 2017. 12. 22.에서 2018. 12. 21.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를 발급하였다(즉, 피고는 위 보증 방식 변경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약 7년 동안 보증기한만을 연장하였다).

○ 피고는 피보증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B에 대한 평가 작업 내지 기업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의 주요 거래처와 거래 금액 등도 확인하여 왔다. 앞서 본 보증 방식 변경 후에도 원고와 B는 마켓플레이스 회사의 중개를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의 거래를 하지 않고 기존의 거래 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에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형식적 · 기계적으로 보증기한만을 연장하였고, B으로부터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 받았다(약 19년 동안 B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D은 B이 파산하기 전 약 5년간 피고에게 납부한 보증 수수료 금액이 총 2,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위와 같은 보증 방식 변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B이 피고에게 매년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 B은 파산신청을 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증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 대한 보증은 기존 약속어음 방식 보증의 연장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보증한도액 내에서 보증금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 이처럼 피고가 보증방식의 변경과 관련한 조치를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보증대상을 전자상거래계약으로 한정하는 것은 업무의 편의를 기하는 외에 허위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나 B의 지위,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회사들이 허위거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고려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는 전자상거래계약 외에 일반상거래계약에 대한 보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보증방식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바, 이러한 사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원고나 B로서는 구체적인 보증방식의 변경내용과 그 법률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받았다면 굳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종전의 거래방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10. 29. 보증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과 원고에게 그와 같은 보증 방식 변경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전자상거래담보보증약관의 내용 중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만을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원고와 B,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져 온 거래관계, 위 보증 방식 변경의 경위 및 과정, 변경된 보증서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의 보증 책임은 원고와 B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에 의해 B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가 매년 갱신되어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행을 거절할 만한 면책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4,291,868,206원 중 보증 한도액인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금 청구 다음 날인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계약상 청구를 대체로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이재민 판사 안현정